

◎ 통계청 고시 제2023-496호

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(협의)을 고시합니다.

2023년 9월 18일
통 계 청 장

1. 통계의 명칭: 창원시고령자통계
2. 통계작성기관의 명칭: 경상남도 창원시
3. 통계작성승인(협의)번호 [작성승인(협의)일]: 제791009호[2023. 9. 15.]
4. 통계작성의 목적: 창원시 고령인구의 경제·사회적 상황에 대한 다각적 분석 및 변화예측으로 안정되고 건강한 실버세대 준비를 위한 맞춤형 고령자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
5. 통계작성의 대상: 2022.12.31.기준 현재 창원시 주민등록인구 중 고령자(만65세 이상)
6. 통계작성의 주기: 3년
7. 통계작성의 방법: 가공통계/일반통계